일반논문

인문논총 제70집 (2013), pp. 3~60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열하일기』

구 범 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 서론

건륭 45년(1780) 8월 13일은 건륭제의 칠순 생일이었다.[1] 청에서 황제의 '칠순만수'(七旬萬壽)는 사상 최초의 일대 경사였다. 건륭제는 8월 13일 피서산장(避暑山莊) 담박경성전(澹泊敬誠殿)에서 거행한 만수절 하례(賀禮)에 두르베트, 우량하이, 토르구트, 회부(回部), 금천(金川) 지역 토사(土司) 등을 참석시킴으로써 자신의 치세에 이룩한 '제국' 건설의 업적을 성대하게 기념하였다.[2] 왕조의 일대 경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칠순만수'는 10년 뒤의 '팔순만수'에 의해 빛이 바랬다고 하겠으나, 오늘날 연구자들은 오히려 '팔순만수'보다 '칠순만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

1) 이 글의 날짜 표기는 청 황제의 연호와 음력을 적는 당시의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범진(2013),「1780년 열하의 칠순 만수절과 건륭의 '제국'」,『명청사연구』40 참조.

주제어:『열하일기』, 열하, 박지원, 박명원, 건륭제, 판첸 라마
Yŏrha ilgi, Chengde, Pak Chiwŏn, Pak Myŏngwon, Qianlong Emperor, Panchen Lama

다. 그것은 판첸 라마 6세[또는 3세][3] 롭상 뻴덴 예셰(bLo zang dpal ldan yeshes: 1738~1780년)의 열하 방문 및 건륭제와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칠순만수'를 계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달라이 라마 8세(1758~1804년)는 아직 청으로부터 정식 봉호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4] 티베트 불교 겔룩파, 즉 황교(黃敎)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는 판첸 라마 6세(이하 '판첸')였다. 따라서 건륭과 판첸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의례'는 청·티베트 관계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여기에 오늘날 중국과 티베트의 정치적 이해가 얽히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5] 이 논쟁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헌, 즉 『열하일기』가 주요 사료로 종종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이 간다.[6]

3) 전생(轉生)의 대수(代數)를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롭상 뻴덴 예셰는 '판첸 라마 6세' 또는 '판첸 라마 3세'로 불린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구범진(2013), 179쪽의 각주 8) 참조.

4) 쿠빌간(khubilgan) 신분이었던 달라이 라마 8세를 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금인(金印)과 칙서(勅書)를 발급한 것은 판첸 라마 6세가 북경에 머물던 건륭 45년 10월의 일이다(『淸實錄』, 건륭 45년 10월 乙卯 조).

5) 이 논쟁의 논점에 대해서는, 石濱由美子(1994), 「パンチェンラマと乾隆帝の會見の背景にある佛教思想について」, 『內陸アジア言語の硏究』 9; James L. Hevia(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p. 46-47 등 참조. 村上信明(2006), 「パンチェンラマ三世の熱河來訪と淸朝旗人官僚の對應」, 『中國: 社會と文化』 21; 張亞輝(2013), 「六世班禪朝覲事件中的空間與儀禮」, 『中國藏學』 2013-1 등은 건륭과 판첸의 만남과 관련된 여러 '의례'를 각각의 성격 여하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판첸에 대한 중국의 연구 현황은 柳森(2010), 「國內近三十年來關于六世班禪朝覲硏究綜述」, 『四川民族學院學報』 19-2 참조.

6) 예컨대, 일본의 연구 중 石濱由美子(1994), 앞의 논문이나 平野聰(2007), 『大淸帝國と中華の混迷』, 東京: 講談社, pp. 197-100 등이 『열하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중국에서도 張雙志(2007), 「18世紀朝鮮學者對淸代西藏的觀察: 讀朴趾源《熱河日記》」, 『中國藏學』 2007-3; 柳森(2012), 「論《熱河日記》中的六世班禪形象」, 『民族文學硏究』 2012-6 등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열하일기』를 중요한 사

널리 알려진 대로,『열하일기』는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사행에 자제군관(子弟軍官)의 신분으로 동참했던 박지원(朴趾源)이 남긴 여행기로, 김창업(金昌業)의『연행일기』(燕行日記), 홍대용(洪大容)의『연기』(燕記)와 더불어 '연행록'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열하일기』에 대해서는 한국 문학사와 사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가 나왔으며, 몇 차례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시대 문헌으로는 보기 드물게 독서 대중의 폭넓은 사랑까지 받고 있다.[7]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으로서의 우수성에 더하여 저자 박지원이 18세기 북학파 지식인의 대표자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열하일기』는 청조 치하의 18세기 중국에 대한 조선인의 관찰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며, 근래에는 중국에서도 적잖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8]『열하일기』가 다양한 분야, 많은 연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풍부한 내용 덕분이지만, 다른 '연행록'과 비교할 때 가장 두

료로 이용하고 있다.

7) 한국 문학사 분야에서는 강동엽(1988),『熱河日記硏究』, 서울: 一志社; 김명호(1990),『熱河日記 硏究』, 서울: 창작과 비평사 등을『열하일기』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 두 연구가 나온 이후로『열하일기』의 내용과 형식 및 각종 이본(異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독서 대중에 박지원과『열하일기』를 소개하는 다수의 교양서가 출판되었다.『열하일기』의 번역 성과로는 최근에 나온 김혈조(2009),『열하일기』, 서울: 돌베개 정도만 언급해 둔다. 기타『열하일기』의 번역에 대해서는, 김혈조(2008),「『熱河日記』 번역의 여러 문제들」,『漢文學報』 19 참조. 한국 사상사 분야에서『열하일기』를 전론한 단행본은 보이지 않으나, 박지원의 사상을 다루는 논문이라면『열하일기』의 내용을 반드시 언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閔斗基(1986),「熱河日記에 비친 淸朝政治의 諸樣相」, 閔斗基,『中國近代史硏究』, 서울: 一潮閣, 54~84쪽; 崔韶子(1992),「18세기 후반 조선지식인 朴趾源의 對外認識」,『韓國文化硏究院論叢』(이화여대) 61-1; 崔韶子(1997),「18世紀末 東西洋 知識人의 中國認識比較: 朴趾源의『熱河日記』와 G. Macartney의『中國訪問使節日記』를 중심으로」,『東洋史學硏究』 59 등 참조. 중국에서도 馬靖妮(2007),「《熱河日記》中的中國形象硏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등 다수의 관련 연구가 나왔다.

드러지는『열하일기』의 내용상 특징은 역시 조선인의 '열하 경험'을 최초로, 그것도 빼어난 글솜씨로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일 것이다. 박지원은 자신을 포함한 조선 사신 일행의 '열하 경험'을「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찰십륜포」(札什倫布),「반선시말」(班禪始末),「황교문답」(黃敎問答),「행재잡록」(行在雜錄) 등에서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건륭과 판첸의 만남에 대한「찰십륜포」의 묘사는 위에서 언급한 논쟁과 관련하여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열하일기』의 '열하 경험'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텍스트 자체의 내용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즉 '열하 경험'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판첸이라는 존재와 그에 대한 박지원의 인식, 그리고 조선 사신 일행과 판첸의 만남 등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자 박지원이 참여했던 조선 사행, 즉 박명원(朴明源)이 이끌었던 '진하겸사은행'(進賀兼謝恩行)의 활동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 같다.[9] 그러나 박지원의 '열하 경험'은 기본적으로 박명원의 '진하겸사은행'이라는 특별한 사행이 낳은 산물이었다.『열하일기』의 '열하 경험'이 박명원 일행의 사행 활동 내용을 반영한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

9) 건륭제가 박명원 일행을 열하로 불러들인 이유를 밝히고자 한 차혜원(2010),「열하 사절단이 체험한 18세기 말의 국제질서: 변동하는 조공책봉 관계의 증언」,『역사비평』93이나 조선・청 관계의 안정기에 평화를 지속시킨 유교권・비(非)유교권 간 '분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박명원 일행의 사행 및 판첸과의 만남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 姜東局(2012),「清と朝鮮の關係における圈域の分離と融合: 朝鮮使節とパンチェン・ラマの邂逅(1780)を事例に」,『名古屋大學法政論集』245 정도가 극소수의 예외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이 두 논문은 모두 관련 사실의 인식에서 적잖은 오해를 보이고 있다. 두 논문의 오해를 하나하나 짚을 여유는 없으므로, 중요한 몇 가지만 관련 부분의 각주에서 언급할 것이다. 또한 姜東局은『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동문휘고』등 조선의 정부 기록이 박명원 일행과 판첸의 만남에 관한 것을 죄다 '은폐'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고찰을 통해서 판첸과의 만남을 조선의 정부 기록이 '은폐'했다는 姜東局의 판단은 사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그의 논지도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서『열하일기』의 텍스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명원의 사행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건륭 45년의 '진하겸사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0]

게다가 이 글의 고찰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박명원의 사행 활동과『열하일기』의 관계는 단지 전자가 후자의 '열하 경험'에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박지원은 자료의 정리 및 편집 과정을 거쳐 대략 1783년경『열하일기』를 일단 탈고한 것으로 추정된다.[11] 그는『열하일기』를 집필하면서 '연행록'의 일반적 형식인 일기체를 채택하지 않았다. 압록강을 건넌 6월 24일부터 열하에서 북경에 돌아온 8월 20일까지만을 일기체로 서술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다양한 견문을 내용에 따라 여러 편(篇)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 출발에서 도강(渡江)까지와 북경에서 돌아오는 여정은 아예 쓰지 않았다. 여행 과정의 견문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옮기기보다는 어떤 의도하에 견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했던 것이다.[12] 여기서 '열하 경험'의 텍스트화 과정, 즉 견문의 취사선택 및 구성(plot)에도 박지원의 어떤 의도가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의도의 존재 여부 및 영향 여하는 텍스트 '내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텍스트 '내부'에서 벗어나 박명원의 사행 활동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고 하겠는데,[13] 이 글에서는 박

10) 사실 개별 사행에 대한 관심 저조는 건륭 45년의 '진하겸사은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대명(對明)·대청(對淸) 사행 연구는 대체로 사행 일반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행의 시간상 변화 양상이나 관련 외교 사안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행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1) 김명호(1990), 앞의 책, 22쪽.

12) 崔千集(1997),「『熱河日記』의 表現方式과 그 意圖」,『문학과 언어』18은「金蓼少鈔」등 6편에 대하여 박지원의 저술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글과는 분석 대상과 접근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열하일기』연구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의 시도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金東錫(2005),「『수사록』과 기타 자료를 통해 읽어보는『열하일기』」,『대동한문학』

명원 일행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시 조선에서 일어난 '외부'의 사건이 하나의 컨텍스트를 형성함으로써 '열하 경험'의 텍스트화 과정을 규정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열하일기』 이외의 사료를 주로 활용하여 박명원 일행의 활동에 관한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조선 후기 청과의 공식 외교활동은 통상 외교문서의 형태로 문자화되었는데 박명원 일행의 활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제2절에서는 『동문휘고』에 수록된 박명원 사행 관련 외교문서를 한데 모아서 그 내용을 개괄한 다음, 당시 청에서 조선에 보낸 문서 가운데 박명원 일행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청의 예부가 상례(常例)를 깨고 무단 발송했던 일부 자문(咨文)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통해서 박명원 일행의 활동에 관한 보고와 조선 조정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박명원이 북경을 떠나면서 발송한 장계는 활동 보고의 핵심 문서라 할 수 있는데, 『승정원일기』 등이 이 장계를 잘못된 날짜에 기록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박명원 등의 활동 관련 소식이 서울에 도착한 시점 및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은사 파견이 결정되는 과정을 밝힐 것이다. 제4절에서는 박명원 일행이 건륭제가 국왕 정조(正祖)에게 선물한 것이라며 들고 온 불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불상으로 인해 박명원 일행은 '봉불지사'(奉佛之使)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 기실 문제의 불상은 판첸의 선물을 황제의 선물로 '오해'한 것이었다.

제5절에서는 박명원 일행에 대한 '봉불지사' 혐의를 벗기 위한 일종의 변호론이 『열하일기』에 어떤 내용과 구성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박지원은 청에서 조선으로 보낸 일부 자문이 예부의 문서 변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고발하는 한편, 「찰십륜포」에서 박명원 일행

23은 『열하일기』의 내용을 다른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이는 일단 『열하일기』의 텍스트 '내부'에서 벗어난 연구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박명원의 사행 활동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 분석은 아니다.

이 판첸과 만날 때 수행했던 '의례'의 실상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또한 「찰십륜포」의 말미에 '건륭과 판첸의 만남'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봉불지사' 변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제6절의 결론에서는『열하일기』에 텍스트화된 '열하 경험'을 박명원 일행에 가해진 '봉불지사' 혐의라는 컨텍스트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사료로서『열하일기』를 다룰 때에는 사료 비판적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2. 칠순 진하특사의 외교문서

청의 입관(入關) 이후 황제의 만수절에 대한 조선 국왕의 축하는 매년 연말 파견하는 '동지사행'(冬至使行), 정확하게는 '삼절연공행'(三節年貢行) 편에 표문(表文: 聖節表)과 방물(方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4] 건륭 45년이 여느 해와 다를 바 없었다면, 조선은 연말에 파견하는 '삼절연공행'을 통해서 칠순 만수절에 대한 표문・방물을 청에 전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칠순은 청에서 사상 초유의 일대 경사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건륭 44년 말에 파견한 '삼절연공행' 편에 별도의 진하(進賀) 표문・방물을 전달한 데 이어,[15] 건륭 45년 3월에 또 다시 칠순 만수절에 맞추어 박명원을 정사, 정원시(鄭元始)를 부사, 조정진(趙鼎鎭)을 서장관으로 하는 '진하겸사은행'을 특파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박명원 등의 사행은 '진하특사'].[16] 순치 2년 이후 최초로 만수절 당일을 겨

14) 청은 순치 원년 11월 조선에 대하여 "삼절(三節)"["원조(元朝)・동지(冬至)・성절(聖節)"]의 표문・방물을 "원조", 즉 신년 정월 초하루에 병공(倂貢)하도록 하였다(「遣歸世子叙用罷黜官員量減歲幣三節倂貢勅」(순치 원년 11월 19일),『同文彙考』原編 권41, pp. 4b-5a).

15) 「賀皇上七旬表」(건륭 45년 정월 1일),『同文彙考』原編 권15, pp. 9a-9b.

16)『承政院日記』정조 4년 3월 20일 조;『朝鮮王朝實錄』정조 4년 3월 20일 조;『備邊司謄錄』정조 4년 3월 21일 조.

냥하여 파견된 사행이기도 했던 진하특사 일행은[17] 5월 25일 서울을 떠나 6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8월 1일 북경에 도착하였다.[18]

일반적으로 외교문서의 제출과 수령은 대청 사행의 핵심 활동이었다.[19] 조선이 청에 보낸 외교문서는 모두 국왕 명의로 작성되었다. 엄격히 말하자면, 사신은 국왕이 청의 황제에게 제출하는 표문·주문(奏文)이나 청의 예부 등에 보내는 자문을 청 측의 접수 창구[북경에서는 예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에 따라 사신의 독자적인 외교 활동은 금지되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관련 외교문서를 복수로 준비해 갔다가 북경의 현지 상황에 맞추어 하나를 선택·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신의 상황 판단과 임기응변이 중요했다. 또한 사신은 주로 역관을 통해서 청의 관료 등을 상대로 임무의 성공적인 완수에 필요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였다. 건륭 45년의 진하특사는 북경 도착 이후 '열하로의 초청'이라는 '돌발사태'에 맞닥뜨림으로써 종래의 연행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외교문서의 제출과 수령이 그들의 기본 임무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외교문서의 제출과 수령 가운데 먼저 제출의 측면을 보자.

진하특사는 '진하겸사은행'이라는 정식 명칭 그대로 황제의 칠순에 대한 진하 외에 사은의 임무까지 겸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이 제출한 외교문서는 진하 표문[1건]과 사은 표문[4건], 그리고 몇 건의 부속문서로 이루어졌다. 『동문휘고』에서 진하특사가 청에 제출한 표문을 모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17) 순치 2년(1645)의 만수절을 마지막으로, 조선은 청 황제의 만수절 조하(朝賀)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만수절을 축하하는 표문·방물은 매년 연말의 '삼절연공행' 편에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륭 45년의 진하특사 파견은 순치 2년 이후 최초의 만수절 사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 『承政院日記』 정조 4년 5월 25일 조; 정조 4년 6월 28일 조; 정조 4년 7월 4일 조; 정조 4년 9월 17일 조.

19) 김경록(2006),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205쪽.

〈표 1〉 진하특사가 청에 제출한 표문

표 문	날짜(건륭 45년)	출전(『同文彙考』)
「賀聖節表」	8월 13일	原編 권15, pp. 12a-13a
「謝詔書順付表」	5월 25일	原編 권40, pp. 23a-23b
「謝寬免使臣表」	5월 25일	原編 권41, pp. 56b-57a
「謝移准方物表」	5월 25일	原編 권32, pp. 10b-11b
「謝漂人出送表」	5월 25일	原編 권69, pp. 27b-28a

5건의 표문 각각에는 청의 예부에 표문의 상달을 요청하는 자문이 부속되어 있었다.[20] 여기에 「사관면사신표」(謝寬免使臣表)와 관련해서는 예부에 보내는 「회자」(回咨) 1건이 추가로 있었다.[21] 또한 「사이준방물표」(謝移准方物表)와 「사표인출송표」(謝漂人出送表)를 제외한 3건의 표문에는 각각에 대한 방물의 내역을 밝힌 「방물표」(方物表)가 있었다.[22] 그 밖에 3건의 방물 내역을 종합한 「예물총단」(禮物總單)이 있었으므로,[23] 진하특사 일행이 청에 전달한 외교문서는 총 15건에 이른다.

<표 1>의 표문 중에서 사행의 명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하성절표」(賀聖節表)였다. 다른 표문은 모두 진하특사가 서울을 출발한 5월 25일 자였지만, 「하성절표」만은 만수절 날짜에 맞추어 8월 13일 자로 작성되었다. 예년의 경우였다면 이 표문은 건륭 45년 말에 파견하는 '삼절연공행'이 전달했을 터였지만, 이번에는 성절 표문만을 따로 빼서 진하특사를 파견했던 것이다.[24] 나머지 사은 표문 4건은 대부분 진하특

20)『同文彙考』原編 권15, p. 13a; 권40, p. 24a; 권41, p. 57b; 권32, p. 11b; 권69, p. 28a.

21)『同文彙考』原編 권41, pp. 55b-56b.

22)『同文彙考』原編 권15, p. 13a; 권40, pp. 23b-24a; 권41, pp. 57a-57b.

23)『同文彙考』原編 권15, p. 13a.

24) 이에 따라 건륭 45년 말의 '삼절연공행'은 예년과 달리 성절(聖節) 표문·방물을 청에 전하지 않았다.『同文彙考』原編 권32, p. 12a 참조.

사의 바로 앞 사행, 즉 건륭 44년 말 황인점(黃仁點)을 정사로 파견했던 '삼절연공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 글의 주제와는 별 관계가 없다.[25)]

이번에는 진하특사와 관련하여 청이 조선에 보낸 외교문서를 살펴보자. 『동문휘고』에서 진하특사와 관련하여 청의 예부가 조선 국왕에게 보낸 문서를 모두 뽑아 작성 날짜 순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진하특사 관련 청 예부의 자문

문서	날짜 (건륭 45년)	출전 (『同文彙考』)
「禮部抄錄行在禮部原奏咨」#		原編 권15, pp. 13b-14b
「禮部知會使臣謝摺知道及抄錄賞單咨」#		原編 권15, pp. 15a-15b
「禮部知會查收賀聖節方物永停陳謝方物咨」#	8월 20일	原編 권40, pp. 24a-25a
「禮部知會謝詔書順付表知道咨」*	8월 26일	原編 권40, p. 24a
「禮部知會謝移准表知道咨」*	8월 26일	原編 권32, p. 11b
「禮部知會謝漂人出送表知道咨」*	8월 26일	原編 권69, p. 28a
「禮部知會賀七旬聖節表知道咨」*	8월 28일	原編 권15, pp. 13a-13b
「禮部知會謝寬免使臣表知道咨」*	8월 28일	原編 권41, p. 57b
「禮部知會賜物及頒賞使臣咨」	(9월 4일)	原編 권15, pp. 15b-16b
「禮部知會琉球國漂人轉解北京咨」	9월 15일	原編 권69, pp. 28a-29a

25) 「謝詔書順付表」는 건륭 45년 정월 초하루에 반포한 조서를 황인점 일행에게 순부(順付)함으로써 조선의 칙사 접대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한 사은 표문이었다. 「謝寬免使臣表」는 건륭 45년 정월 황인점 일행의 마부가 일으킨 실화(失火) 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조치에 대한 사은 표문이었다. 진하특사는 화재 사건 해명을 위한 주본(奏本)도 함께 준비해 갔지만 박명원이 현지에서 주본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사은 표문만 제출하였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9월 17일 조). 「謝移准方物表」는 황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진하 표문에 딸려 황인점 일행이 전달한 방물을 해마다 전달하는 "정공(正貢)"으로 충당하라는 건륭제의 지시에 대응한 것이었다. 끝으로 「謝漂人出送表」는 황인점의 사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건륭 44년 12월 봉황성(鳳凰城) 관내 바닷가에 표류한 조선인 어부 8명을 송환해 준 데 대한 사은 표문이었다.

<표 2>에서 8월 26일 또는 28일 자로 작성된 자문 5건에는 '*' 표시를 붙였다. 이 5건은 <표 1>의 각 표문을 황제에게 올려 "알았다[知道了]"라는 유지(諭旨)를 받았음을 알린 것으로 여기서 따로 내용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끝에서 두 번째에 보이는 「예부지회사물급반상사신자」(禮部知會賜物及頒賞使臣咨)[물품 사여 및 사신에 대한 반상(頒賞)을 알리는 자문]는『동문휘고』에 작성 날짜가 생략되었으나, 9월 3일 황제에게 보고하고 9월 4일 "의논한 대로 하라"[依議]는 유지를 받았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9월 4일 자로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첫머리에서 8월 13일 진하특사 일행에 대한 황제의 '가상'(加賞), 즉 정례(定例) 외의 특별 상사(賞賜)도 언급하였으나, 이 자문의 취지는 조선 사신에게 규정대로 선물을 주고["照例賞賜"] 연회를 베풀었음["照例筵宴二次"]을 알리는 데 있었다. 맨 마지막의 「예부지회유구국표인전해북경자」(禮部知會琉球國漂人轉解北京咨)[유구국에 갔던 표류민을 북경으로 보냈음을 알리는 자문]는 유구(琉球)에서 조선인 표류민을 복건(福建)을 거쳐 북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송환 예정 표류민 남녀 12명의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상의 자문 7건은 청이 조선에 보내는 '일상'적 성격의 외교문서였다. 또한 예부가 조선에 보내는 자문은 조선 사신이 북경에 와 있는 경우 사신의 귀국 편에 맡겨서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 정사 박명원과 부사 정원시가 9월 17일 북경을 떠나면서 연명으로 올린 장계[이하 「9.17 장계」]를 보면, 9월 15일 오문(午門) 앞에서 상물(賞物)을 받은 뒤 "회자"(回咨) 6건을 수령하였다고 한다.[26] 이 6건은 <표 2>의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자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9.17 장계」의 말미에는 조선인의 유구 표류에 관한 예부의 자문을 수령하였기에 비변사로 베껴 보낸다는 내용이 보인다. <표 2>에서 보듯이 이 자문의 작성 날짜는 9

26)『承政院日記』정조 4년 9월 17일 조. 이 장계는『朝鮮王朝實錄』정조 4년 9월 17일 조에도 실려 있다. 이하 「9.17 장계」의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월 15일이었다. 예부는 9월 15일 6건의 자문을 건낸 뒤, 아마도 16일에 이 자문을 추가로 건넨 것 같다. 「9.17 장계」에 더 이상의 자문 수령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박명원 등이 직접 수령한 외교문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7건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동문휘고』에는 진하특사와 관련하여 예부가 보낸 자문이 10건 수록되어 있다. 예부가 박명원에게 건넨 자문이 위의 7건이었다면, <표 2>에서 '#' 표시를 붙인 나머지 자문 3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선에 전달된 것일까? 이 자문 3건의 내용과 전달 과정은 후술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문 3건의 전달 경위를 푸는 실마리는 「9.17 장계」에서 찾을 수 있다. 장계를 보면, "견공(蠲貢)과 황제가 열하에서 반상(頒賞)한 (일에 관한) 문서는 8월 20일에 이미 병부(兵部)로부터 발송"하였다는 서술이 보인다. 박명원은 상례대로 자신에게 건네지 않았을뿐더러 심지어 알리지도 않은 채 문서를 병부로 넘겨 역전(驛傳)으로 발송한 까닭을 예부에 가서 따졌다. 예부는 열하의 행재예부가 황제의 유지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선에 먼저 알리라고 시켰기 때문이라고 대꾸하였다.[27] 3건의 자문 중 「예부지회사수하성절방물영정진사자」(禮部知會查收賀聖節方物永停陳謝方物咨)[성절 축하 방물을 접수하며 (향후) 사은 방물은 영원히 정지시킴을 알리는 자문: 이하 「영정진사방물자문」]는 작성 날짜가 8월 20일로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견공", 즉 사은 공물의 면제에 관한 내용이므로 예부가 상례를 무시하고 발송한 문서였음이 확실하다.

이제 남은 것은 「예부초록행재예부원주자」(禮部抄錄行在禮部原奏咨)[행재예부의 원주(原奏)를 초록(抄錄)한 자문: 이하 「초록원주자문」]와

27) 상례를 어긴 예부의 문서 발송은 박지원도 비판하고 있다(朴趾源, 『熱河日記』 「行在雜錄」, p. 192).

「예부지회사신사접지도급초록상단자」(禮部知會使臣謝摺知道及抄錄賞單咨)[사신의 사은 정문에 (황제가) '알았다'고 하였음을 알리고 상물 목록을 초록한 자문: 이하「사신사접자문」]이다.『동문휘고』는 두 자문의 날짜를 생략한 채 8월 28일 자인「예부지회하칠순성절표지도자」(禮部知會賀七旬聖節表知道咨)[칠순 성절을 축하하는 표문에 (황제가) '알았다'고 하였음을 알리는 자문] 다음에 실었다.『동문휘고』의 수록 순서만 놓고 보면 두 자문의 작성 날짜 역시 8월 28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 박명원이 직접 수령한 자문은 7건이 아니라 9건이 되었어야 한다. 또 장계 내용에 따르면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은 "견공"과 "반상"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견공"에 관한「영정진사방물자문」외에 "반상" 관련 자문이 추가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동문휘고』가 날짜를 생략한 두 자문의 내용이 만약 열하에서 있었던 "반상" 내지 우대 조치와 관계가 있으며 행재예부가 처리한 사안이었다면, 두 자문은 8월 20일에 발송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록원주자문」은 황제에게 3건의 상주를 올렸다는 행재예부의 자문을 받았으니 각 상주를 초록하여 조선 국왕에게 알린다는 내용이며, 3건의 상주 및 각각에 대한 황제의 간단한 유지["알았다"]가「원주(原奏)」라는 제목으로 첨부되어 있다. 첨부된「원주」에 초록된 행재예부의 상주 3건은 "조선국사신래도열하일접"(朝鮮國使臣來到熱河一摺)[조선국 사신이 열하에 도착했음을 아뢴 상주], "조선국사신공사천은일접"(朝鮮國使臣恭謝天恩一摺)[조선국 사신이 천자의 은혜에 삼가 감사하였음을 아뢴 상주], "반선액이덕니급여사신물건주문일접"(班禪額爾德呢給與使臣物件奏聞一摺)[판첸 어르더니가 사신에게 물건을 주었음을 아뢰는 상주: 이하「판첸급여사신주접」] 등인데, 각각에 대하여 유지가 내린 날짜는 8월 9일, 8월 10일, 8월 12일이었다.[28] 3건의 상주 가운데 뒤의 2건은 내용상

28)「原奏」,『同文彙考』原編 권15, pp. 13b-14b.

황제의 “반상”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조선의 진하특사에 대한 우대 조치 또는 판첸의 선물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신사접자문」은 박명원 등이 황제의 “가상”에 감사한다는 “정문”(呈文)을 행재예부에 제출하여 황제에게 대신 아뢰어 줄 것[“代爲轉奏”]을 요청하였기에 상주하였고, 이에 대해 8월 14일 황제가 “알았다.”라는 유지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행재예부는 이 상주와 유지를 자문으로 꾸며 북경으로 보냈고, 북경 예부에서는 여기에 “가상”의 내역을 담은 상단(賞單)을 덧붙인 자문을 만들어 조선에 보냈다.

이처럼 「초록원주자문」과 「사신사접자문」은 모두 진하특사의 열하 체류 기간[8월 9일~14일]에 있었던 우대 조치 내지 “반상” 관련 사실을 행재예부가 북경에 알린 것을 북경의 예부가 다시 조선 국왕에게 통보한 것이다. 8월 20일로 날짜가 명기된 「영정진사방물자문」 역시 8월 12일 건륭제가 내린 유지를 마찬가지 경로로 조선에 알린 것이었다.[29] 따라서 「초록원주자문」과 「사신사접자문」의 작성 날짜는 8월 28일이 아니라, 「영정진사방물자문」과 마찬가지로 8월 20일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부의 8월 20일 자 자문 3건은 박명원이 직접 수령한 자문 7건과는 성격이 달랐다. 후자는 애초에 조선이 보낸 표문을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한 문서, 어떤 사행에나 수반되기 마련인 예물 및 연회 관련 문서, 표류민 송환 시 절차상 발송하는 문서 등이었기 때문에 예부가 상례를 준수하여 박명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반면에, 전자는 열하에서 건륭제가 진하특사를 상대로 베푼 특별 우대 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행재예부는 북경의 예부에 이런 사실을 조선에 알리도록 하였고, 예부에서는 박명원 일행의 귀국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8월 20일에 문서를 병부로 넘겨 역전을 통해 발송했던 것이다.

---

29) 이 유지는 『淸實錄』 건륭 45년 8월 戊午 조에도 실려 있다.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3건의 자문 중에서도 특히「초록원주자문」과「사신사접자문」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자문은 예부의 상례를 벗어난 발송이라는 문제 외에 판첸과의 만남이나 행재예부의 문서 내용 변조 등 진하특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이『열하일기』에 남긴 진하특사 활동 관련 기록도 이 두 자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후술). 아래의 제3절에서는 진하특사의 활동에 관한 소식이 어떻게 조선 조정에 전달되었고 조선 조정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지를 살펴볼 것인데, 8월 20일 예부의 자문 발송은 특히 조선 조정의 사은사 파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3. 진하특사의 활동 보고와 조선 조정의 대응

5월 25일 진하특사가 서울을 떠난 이후 조선 조정은 오직 서울로 들어오는 문서를 통해서만 그들의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경으로 가져간 표문·주문 등 외교문서에 대한 청 측의 공식 회답 문서는 보통 귀국하는 사신이 수령하였다. 이 경우 조선 조정이 사행의 경과나 결과를 파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서울의 조정에서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신은 귀국 전에 서울로 장계를 보냈는데, 건륭 45년의 진하특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을 떠난 이후 진하특사가 올린 장계는 여러 건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앞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 북경을 떠나면서 서울로 보낸 장계, 즉「9.17 장계」에 주목하고자 한다.[30] 진하특사의 주요 활동을 날짜별로

30)『승정원일기』에서는「9.17 장계」에 앞서 박명원·정원시가 올린 장계를 5건 더 찾을 수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6월 12일 조; 6월 13일 조; 6월 20일 조; 6월 28일 조; 7월 4일 조). 각 장계의 내용을 보면『승정원일기』의 날짜가 장계의 발송

보고한 「9.17 장계」는 공식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장계에서 열하 체류 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을 뽑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31]

〈표 3〉 진하특사의 열하 체류 기간 활동 내역

날짜	활동 내역
8월 9일	진시(辰時) 무렵 박명원 일행은 열하에 도착, 승덕부(承德府) 태학(太學)에 투숙하였다. 황제가 특별히 군기장경(軍機章京) 소림(素林)을 보내어, 조선 사신의 열하 방문은 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만수를 진하(進賀)하러 왔으므로 정사는 2품, 부사는 3품 관원의 반열에서 의례에 참석하도록 하는 "격외지은"(格外之恩)을 베푼다는 유지를 전하였다. 저녁이 되자 예부상서가 통관(通官)을 보내어, 황제로부터 "광절지은"(曠絶之恩)을 입었으니 "고사지의"(叩謝之意)를 담은 정문을 써서 제출하면 황제에게 대신 상주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명원은 "배신(陪臣)이 은명(恩命)에 사사(私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예부에서는 황제가 특별히 관원을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사신이 어찌 문서로 먼저 고사(叩謝)할 수 없느냐?"라고 하며서 거듭 재촉하였다. 박명원은 예부의 태도를 보건대 아무래도 예부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하여 부득이하게 "고사지의"를 대략 담아 정문을 제출하였다.
8월 10일	새벽에 박명원은 전날의 정문을 담은 상주에 대하여 건륭제가 내린 "알았다."라는 유지에 사은하기 위하여 피서산장으로 갔다. 이날 황제는 박명원에게 "삼기찬"(三器饌)을 "반사"(頒賜)하였고, 박명원은 사은 의례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였다.

일이 아닌 서울 도착일임을 알 수 있다. 이 5건의 장계는 청에 제출할 외교문서의 사대(査對)와 조선 출국 및 청 입국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진하특사의 본격적인 활동 내역에 관한 보고는 아니었다. 박명원 일행의 활동에 관한 본격적인 보고는 「9.17 장계」가 최초이며 가장 자세하다. 한편 노이점(盧以漸)의 『수사록(隨槎錄)』을 보면, 박명원 일행은 6월 4일 황강(黃岡)과 6월 6일 평양에서 외교문서의 사대를 실시하였다고 한다(權廷雄(1999), 「盧以漸의 『隨槎錄』: 解題 및 原文 標點」, 『경북사학』 22, 150-151쪽). 문서를 사대할 때마다 장계를 보냈다면 황강과 평양에서 보낸 장계도 있었을 터이지만 『승정원일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31) 「9.17 장계」에는 책문을 통과해서 열하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열하에서 북경에 돌아온 이후 9월 17일 북경을 떠날 때까지의 활동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날짜	활동 내역
8월 11일	새벽 박명원은 오늘 황제가 반드시 인견(引見)하리라는 제독(提督)의 말을 듣고 피서산장에 가서 대기하였다. 또 다시 "삼기찬"의 "반사"가 있었다. 묘시(卯時)에 황제가 궁문(宮門)으로 나오자, 예부의 만상서(滿尙書) 덕보(德保)가 삼사(三使)와 세 역관을 이끌고 어좌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황제가 "국왕은 평안한가?"라고 묻자, 박명원은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가운데 만주어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라고 황제가 다시 묻자, 청의 통관들이 주저하는 사이 청학(淸學) 윤갑종(尹甲宗)이 "대략 이해합니다."라고 답하였다. 황제가 미소를 지으며 물러갈 것을 명하였으나, 박명원은 황제가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열에 서서 기다렸다. 이때 황제가 군기장경을 시켜, "너희 나라에서도 부처를 공경하는가? 사찰은 몇 군데 있는가? 관제묘 또한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속(國俗)이 본디 부처를 숭상하지 않으나, 사찰이라면 외방(外方)에 간혹 있기는 합니다. 관제묘는 성 밖에 두 곳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황제가 안으로 돌아간 뒤 박명원은 숙소로 돌아왔는데, 황제가 또 다시 생여지주(生荔枝酒) 1병을 내렸다.
8월 12일	황제가 희대(戱臺)에 임어(臨御)하여 연희 공연을 베풀고, 문・무 3품 이상 관원에게 구경하도록 하였는데, 조선 사신도 같이 "관희"(觀戱)하라고 명하였다. 박명원은 새벽에 입궐하여 배정된 반차에서 공연을 보았다. 공연은 묘시에 시작하여 미정(未正)에 끝이 났다. 황제는 "관희"에 참석한 신하들과 박명원 등에게 단필(緞疋) 등의 선물을 주었다.
8월 13일	박명원은 만수절 하례에 참석한 다음, 또 다시 "희장"(戱場)에 들어갔다. 황제는 박명원에게 차를 하사하였다. 미정에 "희장"을 나오자 예부가 궐내에 대기하라고 했는데, 황제가 국왕에 대한 "별예단"(別禮單) 18필을 "특송"(特送)하고, 삼사와 종관(從官)에게 단필(緞疋)을, 종인(從人) 64명에게 은 2냥씩을 하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부는 또 다시 박명원에게 사은 정문 제출을 요구하였다. 박명원은 이번에는 국왕에게 보낼 "별예단"이 있기 때문에 사신의 "사사"(私謝)는 더욱 불가하다고 하면서 버텼다. 그러나 예부는 사신의 별상(別賞)에 대한 정문 제출은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였다. 박명원은 할 수 없이 "별상을 삼가 받았다는 뜻"만 적어 정문으로 제출하였다.

날짜	활동 내역
8월 14일	전일에 올린 정문과 관련하여 10일과 마찬가지로 사은을 한 뒤 또 다시 “희장”에 들어갔다. 이 공연은 닷새를 해야 끝이 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날도 역시 미정에 “희장”을 나왔다. 그 뒤로는 지시에 따라 후원(後園)의 “매포처”(埋砲處)에 대기하다가 황제가 “장전”(帳殿)에 임어하자 “화포(火砲) 및 잡희(雜戲)”를 관람하였다. 해가 진 뒤 관람이 끝나자, 예부가 내일 북경으로 돌아가라는 황제의 유지가 막 내려졌음을 전하였다.
8월 15일	열하를 떠났다(20일 북경 도착).

<표 3>에서 정리한 진하특사의 활동 내역 가운데 8월 11일~14일의 주요 활동은 청의 실록이나 기거주(起居注) 등의 기록과도 부합한다. 8월 11일 건륭제는 박명원을 비롯한 조선 사신 3인을 피서산장 궁문에서 접견하였다. 8월 12일~16일의 닷새에 걸쳐 건륭제는 피서산장 권아승경(卷阿勝境)에서 만수절 축하를 위해 열하에 집결한 이들에게 “다과”(茶果)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12일~14일의 사흘은 박명원 등 3인이 참석자 명단에 올라있다. 청의 실록과 기거주는 “사다과”(賜茶果)만 언급했으나, 「9.17 장계」를 통해서 그것이 실은 “관희”(觀戲)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8월 13일에는 담박경성전에서 만수절 경하례가 거행되었고, 8월 14일 저녁 무렵에는 건륭제가 만수원(萬樹園) 대악차(大幄次)[<표 3>의 “장전”(帳殿)]에 거둥하여 “사관화희”(賜觀火戲)한 일이 있었다. 이 두 행사의 참석자 명단에도 박명원 등 3인이 올라있다.[32]

「9.17 장계」의 진하특사 활동 내역이 청 측의 기록과 부합한다는 점 외에, 후술 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판첸과의 만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황제를 알현한 후 군기장경이 불교 사찰과 관제묘에 관한 질문을 던진 사실만 적었

32) 『淸實錄』 건륭 45년 8월 丁巳~壬戌 조; 「乾隆四十五年巡幸熱河起居注」, 『淸宮熱河檔案』 4, 中國檔案出版社, 2003, pp. 490-492.

을 뿐이다. 앞서 살폈듯이 판첸과 만난 사실은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에도 등장하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관련 기록이 풍부하나, 박명원은 「9.17 장계」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박명원이 장계의 말미에서 "별단"(別單) 1건을 따로 올리며, 정사의 군관 주명신(周命新), 부사의 군관 이서구(李瑞龜), 역관 윤갑종 등에게 장계를 건네 먼저 보낸다고 덧붙였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장계의 말미에 등장하는 관계로 <표 3>에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이 글의 후술 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9.17 장계」의 발송에 앞서 박명원이 서울로 보낸 장계는 6월 27일 자가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6월 27일 자 장계가 서울에 도착한 7월 4일 이후 「9.17 장계」가 서울에 올 때까지 조선 조정은 진하특사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33] 그런데 『승정원일기』에서 6월 27일 자까지의 장계는 모두 서울 도착일 기사로 수록되었지만, 유독 「9.17 장계」만은 도착일이 아닌 발송일, 즉 9월 17일 조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역시 9월 17일 조에 이 장계의 내용을 실었다. 9월 17일 북경을 떠날 때까지의 상황을 전하는 장계가 같은 날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두 연대기 자료의 날짜 오류가 분명하다. 이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장계의 서울 도착일을 확인해야 할 터인데,[34] 이에 앞서 진하특사가 북경을 떠난 직후 조선 조정에서 사은사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9.17 장계」가 서울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조정이 9월 20일부

33) 『承政院日記』 정조 4년 7월 4일 조.

34) 진하특사의 바로 앞 사행이었던 황인점 일행이 건륭 45년 2월 27일 북경을 떠나면서 올린 장계는 21일이 지난 뒤인 『承政院日記』 정조 4년 3월 18일 조에 실렸다. 서울 도착까지 비슷한 시일이 걸렸다면, 「9.17 장계」는 아마도 10월 8일을 전후하여 서울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9.17 장계」는 실제로 10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터 진하특사 파견의 사후 대응 조치로 사은사 파견을 준비하는 기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즉, 조선 조정은 9월 20일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의 제안으로 얼마 후 파견할 금년의 "절행"(節行)['삼절연공행': 당시 '동지사'로 통칭]에 사은사 임무를 겸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같은 날 사신 인선도 이루어졌다. 이당(李塘)을 정사, 이숭호(李崇祜)를 부사로 삼았고, 서장관으로는 윤장렬(尹長烈)을 보내기로 하였다.[35]

현존『승정원일기』와『조선왕조실록』을 따라가면, 9월 20일 사은사 파견 논의가 9월 17일 조 박명원의 장계 다음에 등장한다. 자연스럽게「9.17 장계」가 사은사 파견 결정을 이끈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9.17 장계」의 9월 17일 조 수록이 분명한 오류인 이상, 9월 20일의 사은사 파견 논의는 뜬금없는 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은사 파견 논의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9월 20일 김상철이 의주부윤의 장계를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36] 당시 의주부윤의 장계 내용은 발견할 수 없지만, 조선 조정은 이를 통해서 진하특사의 활동과 관련된 모종의 소식을 접수하였고, 그 소식에는 조선 조정이 사은의 뜻을 표시해야 할 일이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주에는 열하 또는 북경으로부터 어떤 문서가 도착했던 것일까? 여기서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3건의 자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무렵 의주에 진하특사 관련 소식을 전했을 문서는 이들 자문 3건 외에는 없었고, 앞에 서술하였듯이 이 3건의 자문에는 진하특사 일행에 대한 건륭제의 우대 조치와 국왕에 대한 특별 사여가 언급되어 있었다. 조선 조정은 아마도 의주부윤의 장계를 통해 이들 자문 3건의 내용을 접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은사 파견을 논의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10월 9일에 이르러 조선 조정에서는 '동지사'에게 사은사 임무

35)『承政院日記』정조 4년 9월 20일 조;『朝鮮王朝實錄』정조 4년 9월 20일 조.
36)『承政院日記』정조 4년 9월 20일 조.

를 겸하게 하려던 당초의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이날 국왕 정조는 진하특사 일행이 무사히 귀로에 올랐음을 다행으로 여긴다면서, 황제가 다섯 차례나 "인견"하는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우대를 베풀어 주었으니 마땅히 "사은지거"(謝恩之擧)가 있어야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은사 임무를 '동지사'에게 "겸부"(兼付)할지, 아니면 사은사를 "별송"(別送)할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피국(彼國)의 접대"가 심상(尋常)하지 않았으므로 사은사를 "별송"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단사"(單使)로 바뀐 '동지사'의 삼사를 추가로 인선할 필요가 생겼고, 10월 11일 서유경(徐有慶)을 정사, 신대승(申大升)을 부사, 임제원(林濟遠)을 서장관으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37]

10월 9일의 논의 과정에 언급된 사실들은「9.17 장계」가 도착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정조가 언급한 다섯 차례의 "인견"이란, 8월 11일의 최초 알현 외에 8월 12일~14일 사흘 동안의 관희(3회)와 14일의 불꽃놀이 참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실제로 10월 9일 김상철 등은 사은사 "별송"을 결정한 "성교(聖敎)의 지당"함을 언급하면서, "신 등이 선래(先來)의 말을 들으니, 황제의 인견이 한두 번에 이르지 않았고, 연희를 베푼 날 같으면 반드시 불러 만나고 사찬(賜饌)까지 하여, 그 접대한 바가 극도로 충실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38] 이로부터 사은사 "별송" 결정의 계기가 된 것은 "선래"가 전한 소식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선래"란 물론 박명원이「9.17 장계」를 건네 먼저 출발시킨 주명신, 이서구, 윤갑종 등을 가리킨다. 즉,「9.17 장계」는 10월 9일 서울에 도착했던 것이다.[39]

이처럼 사은사 "별송"이 확정된 이후, 10월 23일에 이르러 10월 20일

37)『承政院日記』정조 4년 10월 9일 조;『朝鮮王朝實錄』정조 4년 10월 11일 조.

38)『承政院日記』정조 4년 10월 9일 조.

39) 한편 국왕 정조는 10월 17일 윤갑종을 불러들여 진하특사의 소식을 물었다(『承政院日記』정조 4년 11월 17일 조).

압록강을 건너 입국였음을 보고하는 박명원의 장계가 도착하였다.[40] 이어서 박명원 일행은 10월 27일 서울에 입성하였고, 국왕 정조는 곧바로 이들을 소견(召見)하였다.[41] 이튿날인 10월 28일 이당이 이끄는 사은사 일행이 서울을 떠났다. 서유경이 이끄는 '동지사' 일행이 서울을 떠난 것은 11월 2일이었다.[42] 그리고 진하특사의 서장관 조정진은 11월 5일에 문견사건(聞見事件)을 제출하였다.[43]

4. 불상 문제와 '봉불지사'(奉佛之使)

건륭 45년 8월 열하에서는 조선이 사은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대 조치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진하특사 및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처치하기 곤란한 골칫거리도 안겨주었으니, 그것은 바로 '금불'(金佛)이었다. '금불' 문제는『조선왕조실록』9월 17일 조에 처음 등장한다. 이 기사의 내용은, 황제가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금불 하나"[金佛一軀]를 사신에게 맡겨 보냈다는 보고를 듣고 국왕이 불상을 "묘향산의 불사(佛寺)"에 안치하라고 사신에게 "치유"(馳諭)하였다는 것이다.[44] 그러나「9.17 장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사가 실록의 9월 17일 조에 실린 것은 오류이다. 9월 17일 이전에 진하특사의 활동 소식을 알리는 문서가 서울에 도착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45]

---

40)『承政院日記』정조 4년 10월 23일 조.

41)『承政院日記』정조 4년 10월 27일 조.

42)『同文彙考』補編 권7「使行錄」, pp. 53a-53b.

43)『承政院日記』정조 4년 11월 5일 조;『日省錄』정조 4년 11월 5일 조;「進賀兼謝恩行書狀官趙鼎鎭聞見事件」,『同文彙考』補編 권6, pp. 23a-25b.

44)『朝鮮王朝實錄』정조 4년 9월 17일 조.

45) 또한 이 기사에서 '금불'은 황제가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혜원(2010), 앞의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서는 건륭제가 주었다는 '금불'의 존재를 언제 알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 앞서, 이 '금불'이 서울에서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를 보자. 박명원이 10월 27일 국왕에게 복명(復命)한 지 열흘이 지난 11월 8일, 성균관 유생들이 학업을 중지하고 집단 행동[권당(捲堂)]에 나서는 사태가 일어났다. 권당에 나선 유생들은, "이번에 사신이 돌아올 때 금불을 받아온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본디 유교를 숭상하고 도(道)를 중시함으로써 중화(中華)로부터 공경과 중시를 (받았는데), 이제 이번 전대지행(專對之行)[박명원 일행을 지칭: 인용자]이 사악하고 더러운 물건[邪穢之物]을 지니고 왔다. (이는) 다만 우리 국가에 치욕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천하 후세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박명원 일행을 "봉불지사"(奉佛之使)라고 지탄하였다.[46]

사태가 이렇게 되자, 11월 12일 부사 정원시가 이 일은 한 번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상을 받아온 경위를 밝히면서도 성균관 유생들의 "원칙을 지킨 주장"[守經之論]에 대하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정조는 인책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47] 이어서 박명원 역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가운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정조는 이 일은 "추제"(追提)할 필요가 없으니 박명원에게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48]

'봉불지사'라는 성균관 유생들의 비난 앞에서 박명원과 정원시는 과오

논문은 이 기사를 근거로, 건륭제가 "사절단을 통해 조선왕 정조에게 직접 금불상을 하사"하였다고 하고 건륭제의 금불상 선물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344쪽).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불상은 건륭제가 준 것이 아니었다. 한편 이 기사에서는 '금불'의 수량이 하나였다고 적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주 59)의 서술 참조.

46)『承政院日記』정조 4년 11월 8일 조.

47)『朝鮮王朝實錄』정조 4년 11월 12일 조.

48)『承政院日記』정조 4년 11월 12일 조.